

의안번호	2208014
의 퇴 인	강선우 의원
회 답 일	2025. 3. 12.
추 계 번호	25C072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군복무크레딧 및 출산크레딧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하며, 양육크레딧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9조 9,382억원(연평균 3조 9,876억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	2,278	6,495	6,559	15,332	3,066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7,221	7,876	8,563	9,260	9,958	42,878	8,576
양육크레딧 지원(안 제19조의2)	15,242	30,740	31,291	32,368	31,531	141,172	28,234
추가재정소요 합계	22,463	38,616	42,132	48,123	48,048	199,382	39,876

주: 개정안에 따른 크레딧 지원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II. 재정수반요인¹⁾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군 복무 기간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에게 해당 병역의무를 마친 날에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 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 (현행)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대체복무요원 미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은 A값의 50%를 적용	의무규정
2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녀를 얻은 경우 자녀를 얻은 날에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 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 (무제한) ※ (현행) 둘째 자녀 이상을 가진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경우,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자녀부터 추가 18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최대 50개월)	의무규정

1) 안 제19조제3항, 안 제19조의4에 따라 출산크레딧 및 실업크레딧 소요재정을 모두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경우,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회계 간 거래(재원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19조의2 (양육에 대한 가입 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아동을 13세가 될 때까지 양육한 경우 에는 그 아동이 13세가 된 날에 아동 1인당 24개월을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의무규정
4	안 제19조의3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장애아동을 성년이 될 때까지 돌봄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장애아동이 성년이 된 날에 장애아동 1인당 3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 가로 산입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2	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3	안 제19조의2(양육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의 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을 활용하여 추계
4	안 제19조의3(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18조·제19조·제19조의2) 개정안에 따라 각각 병역의무 이행 완료
시점과 출산 시점, 양육한 아동의 13세 도래 시점부터 해당 기간만큼
연속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밝힌 출산크레딧 지원
시점 변경(출산·입양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기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지원

시점 변경에 따라 지원 방식도 전환(가입기간 산입 → 보험료 지원)되는 것으로 가정

- 현재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시점에 연금액 계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 참고로, 현행 실업크레딧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주는 방식으로 운영
- 실제 지원 기간 내에 경제활동을 할 경우, 본인의 소득보다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더 낮을 경우 지원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이 경우 세부적인 지원 시점 또는 방법이 결정되어야 함
 - 현행법 제51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군복무크레딧 지원 시 기준 소득은 국민연금 A값²⁾의 50%로, 출산크레딧 지원 시 기준 소득은 국민연금 A값의 100%로 설정되어 있음
 - 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소득인정액을 현행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양육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 A값의 100%로 설정하도록 규정
-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크레딧 지원 기간과 경제활동 기간이 중첩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개정안이 명시한 지원 시점부터 중단 없이 해당 기간만큼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가입기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할 A값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을 활용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와 2024년 9월 기준 국회예산정책처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모형에 적용하여 전망
-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및 양육크레딧 대상자 수는 통계청이 2023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기초로 산출

□ 본 추계서에서는 안 제18조·제19조·제19조의2에 따른 연금지출 증가분은 추계 대상에서 제외

- 크레딧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효과로 인해 연금수급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추가재정소요에 포함되나, 현 시점

2)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에서는 지원 기간 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 시점을 알 수 없어 연금 수급액 증가분 추계가 곤란

- 참고로, 연금액 증액 효과는 대상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법 시행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설정된 추계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음

□ 안 제19조의3은 장애아동 돌봄제공자에 대해 추가산입할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 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개정규정 시행 후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는 사람과 출산한 사람, 아동을 13세가 될 때까지 양육한 경우에 적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군복무크레딧 지원(안 제18조)

□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21세 입대하여 19개월의 병역의무 수행 후 23세에 제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³⁾상 23세 남성인구 대비 관련 병역 입대자 비율 및 직역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를 산출

- 개정안에 따른 군복무크레딧 대상자는 현역병⁴⁾, 전환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이며,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자와 2021년에 복무기간 도중에 병역의무가 면제된 자(중도 귀가자)를 모두 포함

- (군 입대 연령) 2021년 현역병 평균 입대 연령인 21세 가정

- (병역 입대자 비율) 2010년 18세에서 시작하여 2021년 29세에 도달한

3)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4) 징집병을 가리킴(장기복무로 전환하지 않고 제대한 학군장교 및 학사장교가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대비 비율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려하지 않음)

사람 중 군복무크레딧 대상이 되는 병역으로 입대한 사람(31.9만명⁵⁾)의 2021년 29세 남성 인구(39.4만명) 대비 비율(80.8%)을 산출하여 적용

- (지역연금 가입률) 2021년 29세 남성 인구 대비 남성 지역연금 가입자 수(2.9만명) 비율(7.3%)을 적용하여 지역연금 가입자 수를 차감

□ (병역의무 수행 기간) 2021년 말 기준 군 복무 중이거나 2021년 중도 귀가⁶⁾한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의 복무유형(복무기간)별 비중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연도별·복무유형별 대상자 수를 산출하고, 연도별·복무유형별 복무기간과 대상자 수를 가중평균하여 대상자 전체의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 현행법은 6개월 미만 복무자는 군복무크레딧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6개월 미만 복무자도 최소 1개월 이상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6개월 미만 복무자를 합하여 평균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산출

[표 2]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군복무 기간

(단위: 개월)

연 도	육군 등 ¹⁾	해군 등 ²⁾	공군	사회복무요원	평균 복무기간 ³⁾
2021	18	20	21	21	18.9

주: 1) 육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2) 해군, 해양경찰

3) 평균 복무기간은 유형별 군 복무기간과 유형별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추정치)를 가중평균한 복무기간을 의미함

자료: 국방부,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의 50%에 보험료율인 9%를 적용

5) 병무청 제출자료

6) 현행법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병역의무 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모두 포함함

[표 3] 군복무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민연금 A값(A)	3,348	3,479	3,621	3,769	3,924
보험료 지원 단가($A \times 50\% \times 9\%$)	151	157	163	170	1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동 법률안 적용 시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에 처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동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2028년에 병역의무를 완료하는 사람부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월별 군복무 완료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군복무 완료자에 대하여 총 18.9개월 지원 기간 중 6.9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고 나머지 12개월의 지원분은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입대 이후부터 지원 둘째 해까지의 기간 중 사망률은 고려하지 않음

[표 4] 군복무크레딧 대상자 수 및 지원 시점 추계

(단위: 명)

입대 연도	군복무 크레딧 대상자 수	지원시점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26	202,539	202,539 (6.9개월)	202,539 (12개월)				
2027	201,484		201,484 (6.9개월)	201,484 (12개월)			
2028	186,609			186,609 (6.9개월)	186,609 (12개월)		
2029	182,138				182,138 (6.9개월)	182,138 (12개월)	
2030	188,789					188,789 (6.9개월)	188,789 (12개월)

주: 괄호 안은 해당 연도 지원 기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점을 군 복무 완료 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조 5,332억원(연평균 3,066억원)으로 추계됨

[표 5] 군복무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군복무크레딧 지원 (안 제18조)	-	-	2,278	6,495	6,559	15,332	3,06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 출산 연령 및 출산크레딧 대상자에 관한 가정

- (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⁷⁾의 0세 인구추계 결과를 적용하되 2023년 기준 30~39세 여성 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수 비율(8.0%)을 차감하여 활용
 - 직역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산율이 동일하다고 가정
- (출산 순위) 출산 순위별 지원 기간이 12개월로 동일하므로 출산 순위를 고려하지 않음

[표 6] 출산크레딧 대상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 인구	217,079	227,833	237,996	247,279	255,406
출산자 중 직역연금 가입자 제외	199,713	209,606	218,956	227,497	234,974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년 공표 통계) 및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출산크레딧 적용을 위한 보험료 지원 단가 및 지원 시점에 관한 가정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에 보험료율인 9%를 적용

7)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표 7] 출산크레딧 보험료 지원 단가 추계: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국민연금 A값(A)	3,348	3,479	3,621	3,769	3,924
보험료 지원 단가(A×9%)	301	313	326	339	35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별 출생아 수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연도 출생아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그 해에 지출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확대(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하고 지원 시점을 변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조 2,878억원(연평균 8,576억원)으로 추계됨

[표 8] 출산크레딧 지원 확대 및 지원 시점 변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출산크레딧 지원(안 제19조)	7,221	7,876	8,563	9,260	9,958	42,878	8,57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양육크레딧 지원(안 제19조의2)

□ 양육크레딧 지원 대상자에 관한 가정

- (크레딧 지원 대상자 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⁸⁾의 13세 인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보호 아동과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 등을 제외하여 대상자 수를 산출
 - (시설보호 아동 비율) 2023년 12월 말 기준 6~11세 주민등록인구(259만 6,780명) 대비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수(840명⁹⁾)의 비율인 0.03% 적용
 - (직역연금 가입률) 2023년 기준 30~39세 여성 인구 대비 직역연금 가입자 수 비율인 8.0% 적용¹⁰⁾

8) 2023년 12월 공표 통계 자료를 사용

9)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시설 현황 자료

10) 이는 직역연금 가입자가 출산한 아동과 국민연금 가입자가 출산한 아동의 시설보호 비율이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함

[표 9] 양육크레딧 대상자 수 추계

(단위: 명)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3세 인구(합계)	458,810	431,039	438,655	426,458	382,872
13세 인구 (시설보호 아동 제외)	458,672	430,910	438,523	426,330	382,757
13세 아동의 보호자 (직역연금 가입자 제외)	421,979	396,437	403,442	392,224	352,13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3년 공표 통계) 및 보건복지부,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국방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양육크레딧 적용을 위한 보험료 지원 단가 및 지원 시점에 관한 가정
 - (보험료 지원 단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형에서 도출된 A값에 보험료율인 9%를 적용
 - [표 7]에서 제시한 출산크레딧 지원 단가와 동일
 - 13세 아동의 태어난 월(月)을 알 수 없으므로, 아동이 13세에 도래하는 연도에 12개월, 그 차년도에 12개월(총 24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13세까지 자녀를 양육한 자에게 24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4조 1,172억원(연평균 2조 8,234억원)으로 추계됨

[표 10] 양육크레딧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양육크레딧 지원 (안 제19조의2)	15,242	30,740	31,291	32,368	31,531	141,172	28,2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 군복무·출산크레딧에 대하여 현행 제도보다 확대된 기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지원하고, 양육크레딧을 신설할 경우 추후 수급자들이 수령할 연금액도 증액되는 결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서는 향후 5년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만 제시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